

의안번호	2209767
의 퇴 인	최기상의원
회 답 일	2025.4.17.
추계번호	25E22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 또는 종업원에 대한 할인금액의 비과세한도 확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2조 (비과세소득)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 또는 종업원 할인금액(이하 '임원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비과세 한도 확대 - 비과세 한도: (현행)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개정안) Max(시가의 30%, 연 360만원) *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조 (비과세소득)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본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 등에게 할인하여 제공함으로써 해당 임원 등이 얻는 이익(할인금액)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경우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에 따른 세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종업원 할인제도 규모 등에 대한 자료 필요
 -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종업원 할인제도 규모 및 이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규모 등에 대한 자료 필요

- 그러나 기업별 종업원 할인제도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 2024년 말 세법개정(2025.1.1. 시행)을 통해 임원 또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비과세 한도를 규정
 - 현행 비과세 한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 현재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제도 시행에 따른 징수실적, 기업별 종업원 할인제도 규모 등이 파악되지 않아 자료에 의한 추계 곤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